

2019년 BI 리모델링(신규 지정 포함) 지원 사업 공고

2019년도 창업보육센터 리모델링(신규 지정 포함)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. 2. 11.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I. 사업 개요

□ 사업 목적

- 창업보육센터(BI)*의 리모델링(신규 지정 포함) 지원 사업을 통해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에게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경영 및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

* 창업보육센터(Business Incubator) :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·장소를 제공하고, 경영·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(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7호)

□ 지원 대상

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따라 지정받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
 - 신규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
- ※ 단, '19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(20개, '18.9.3. 교육부)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

□ 지원 내용

- 총 비용의 최대 80% (최대 3억원) 이내에서 기존 BI의 노후시설개선, 일반건물의 BI 전환 등의 리모델링비 지원(유형별 상이)

* 설계비, 감리비, 건축·전기·통신·기계·소방 공사비 등

* 토지·건물 매입비 및 임차료는 지원 불가

○ 지원 유형별 세부지원내용

유 형		지원 대상	내 용	지원 규모
리 모 델 링 지 원	① 기존 BI 노후시설개선	기존 BI 사업자	기존 BI의 시설개선 공사* 비용 지원 * 학생 창업공간 포함	80% 이내 최대 2억원 한도 *학생창업공간은 90%이내 (50백만원 한도)
	② 일반 건물의 BI 전환		일반건물을 BI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 비용 지원	70%이내 최대 3억원 한도
③ 신규 BI사업자 선정		신규사업자	신규로 BI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	-

□ 세부 지원 요건 : “Ⅱ. 유형별 지원 내용” 참고

□ 추진 일정

○ '19. 2. 11(월) ~ '19. 2. 28 (목), 17:30까지 : 공고 및 신청·접수
* 공고('19.2.11), 신청·접수('19.2.25 ~ 2.28)

○ '19. 3. 4 (월) ~ 3. 8(금) : 현장점검 및 요건확인

○ '19. 3. 14 (목) : 발표평가

* 평가 상세일정 및 장소는 추후 공지

○ '19. 3. 22(금) : 최종선정

※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Ⅱ. 유형별 지원 내용

1 기존 창업보육센터의 노후시설 개선

□ 지원 목적

- 노후화된 BI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BI의 보육환경 및 기능을 개선하고 운영 효과성을 제고

□ 신청 대상

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

□ 신청 요건 : 아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

- ① 창업보육센터로 운영 중인 건물 중 BI개소 이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시설·기능 개선이 필요한 건물 또는 대학(원)생을 위한 창업공간 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

* 최초 BI개소 이후 추가 증축한 건물의 경우 증축한 건물의 BI개소일을 기준으로 경과 기간 산정

- ② 총 사업비의 20% 이상을 현금으로 대응 투자 할 것

* 지자체 등 외부기관의 공동투자금액은 사업자가 투자한 것으로 간주

* 현물 투자는 인정 불가

* 학생창업공간 조성은 총사업비의 10% 이상 대응투자

- ③ 리모델링 지원 사업 완료 이전에 비해 보육실 면적 축소 불가

- ④ 노후시설 개선 후, 개소일로부터 5년 이상 창업보육센터로 운영 할 것

*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10조제④항

선정 규모 및 지원 내용

○ **선정 규모** :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

○ **지원 내용**

- 기존 BI의 시설 개선 조성 공사비용을 지원

* 설계비, 감리비, 건축·전기·통신·기계·소방 공사비 등

* BI운영요령(고시) 제2조제13의3호에서 정의한 “공동으로 보육하는 공간” 조성 가능

* BI에 설치하는 시설·장비 구입비는 대응부담금으로 구입

- 총 사업비의 80% 이내에서 리모델링 면적에 따라 최대 2억원 까지 지원(학생창업공간은 최대 5천만원까지)

리모델링 규모 (리모델링 면적)	지 원 규 모
1,500m ² 미만	최대 1억원
1,500m ² 이상	최대 2억원

2

일반 건물의 창업보육센터 전환

지원 목적

○ 기존의 일반 건물을 창업보육센터로 리모델링하여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 보육을 위한 공간을 확보

신청 대상

○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

신청 요건 : 아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

① 자체 보유하거나 임대를 통해 확보한 일반 건물을 BI로 리모델링

- 리모델링 과정에서 증축하는 경우, 일체의 증축비용은 자체 조달

- ② 리모델링 완료 후 입주기업 보육실 (총 면적의 60% 이상일 것)과 공용 공간을 포함한 BI의 연면적을 500m² 이상 확보할 것
- ③ 총 사업비의 30% 이상을 대응 투자할 것 (단, 대응투자 금액의 50% 이내에서 현물투자 인정)
 - * 지자체 등 외부기관의 공동 투자금액은 사업자가 투자한 것으로 간주
 - * 증축관련 비용은 대응 투자금액으로 불인정
 - * 기준시가 ·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(토지제외)을 현물 투자금액으로 인정
- ④ 신규로 BI 지정을 받고, 일반 건물을 BI로 리모델링을 하는 기관은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6조에 따른 BI 지정요건을 충족할 것
 - ※ "1.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신규지정" 참조 (3페이지)
- ⑤ 리모델링 지원 후, 개소일로부터 5년 이상 창업보육센터로 운영할 것
 - *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10조제④항

□ 선정 규모 및 지원 내용

- 선정 규모 :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
- 지원 내용
 - 일반 건물을 BI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 비용을 지원
 - * 설계비, 감리비, 건축 · 전기 · 통신 · 기계 · 소방 공사비 등 지원
 - * BI운영요령(고시) 제2조제13의3호에서 정의한 “공동으로 보육하는 공간” 조성 가능
 - * BI에 설치하는 시설 · 장비 구입비는 대응부담금으로 구입
 - * 토지 · 건물 매입비 및 임차료는 지원 불가
 - 총 사업비의 70% 이내에서 리모델링 규모 (보육실 면적)에 따라 최대 3억원까지 지원

리모델링 규모 (보육실 면적)	지 원 규 모
300m ² ~ 1,000m ² 미만	최대 2억원
1,000m ² 이상	최대 3억원

3

신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선정

□ 지원 목적

- 일정수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를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신규 지정하여 (예비)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

□ 신청 대상

- 신규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

□ 신청 요건

- BI 지정요건을 충족하였거나, 향후 지정요건 충족을 위한 계획이 있을 것

* 사업기간 동안 지정요건을 충족한 후 결과보고 및 지정 신청

<참고> BI 지정요건

①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m² 이상의 시설을 갖출 것

- * 전용면적(보육실, 지원시설) + 공용면적(복도, 화장실 등. 단, 주차장은 제외)
- * 입주기업 보육실은 총 면적(전용면적+공용면적)의 60% 이상일 것

② 2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갖출 것

- * 전문인력 범위 :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시행령 별표1 참고

③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측정기기 등의 장비 보유

④ 창업보육사업계획이 적합할 것

※ 지정요건은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6조제1항 참고

Ⅲ. 신청·평가 및 문의처

□ 신청·접수기간 및 방법

- 공고 : '19. 2. 11 (월)
- 신청·접수 기간 : '19. 2. 25 (월) ~ '19. 2. 28 (목), 17:30까지
* 마감 당일 17:30시 이후에는 접수 및 수정 불가
- 접수방법 : K-Startup(www.k-startup.go.kr)을 통해 온라인 접수

□ 신청 서류 : 신청서,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

< 유형별 신청서류 >

① 기존 BI의 노후 시설 개선 지원

대상자	신청서류
기존BI 사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리모델링(신규지정)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첨부 양식 <붙임 2, 2-1, 2-2, 2-3> ▪ 대응투자자금 조달 확약서 <붙임 3>, 창업보육사업 계속 확약서 <붙임 4> ▪ 개인정보 제공 . 이용 동의서 <붙임 5>

② 일반 건물의 BI 전환 지원

대상자	신청서류
기존BI 사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리모델링(신규지정)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첨부 양식 <붙임 2, 2-1, 2-2, 2-3> ▪ 대응투자자금 조달 확약서 <붙임 3>, 창업보육사업 계속 확약서 <붙임 4> ▪ 현물투자의 경우, 건물의 기준시가 등 증빙서류 <자체양식> ▪ 소재지역의 창업수요, 기존 운영성과 등 지원 필요성에 대한 참고 서류 <자체양식> ▪ 개인정보 제공 . 이용 동의서 <붙임 5> ▪ 공간 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: 건물 등기부등본, 임대 계약서 등 <자체양식>

③ 신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선정

대상자	신청서류
신규 지정사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정관(법인에 한함), 사업계획서 <붙임 1, 1-1> ▪ 소재지역의 창업수요, 기존 운영성과 등 지정 필요성에 대한 참고 서류 <자체양식> ▪ 개인정보 제공 . 이용 동의서 <붙임 5> ▪ 공간 확보(계획)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: 건물 등기부등본, 임대 계약서 등 <자체양식>

□ 심사 및 선정방법

- 현장점검 및 요건확인 : 현장점검을 통한 신청 요건 확인 및 발표평가 대상 선정
- 발표평가 : 대면평가 실시
 - * 보육 프로그램의 적절성, 보육환경의 우수성, 대응투자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- 최종선정 :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지원금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. 단, '18년 경영평가 기본요건 미충족(60점 미만) BI는 제외

□ 문의처

- (사)한국창업보육협회 (사업팀) : 042-346-9622
 - * 신청요건,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예산집행,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 제출 등
 - *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, 발표평가 관련 등